

# 瑞山市議會議員(朴英雄)懲戒要求의件 審 查 報 告 書

징계자격특별위원회  
1999. 6. 14

## 1. 審查經過

- 가. 發議日字 : 1999. 6. 8
- 나. 發議者 : 김환성 의원외 6인
- 다. 回附日字 : 1999. 6. 14
- 라. 上程日字 : 1999. 6. 14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明魯熙 議員)

### 가. 징계 대상 의원

- 성 명 : 박영웅(朴英雄)
- 주 소 : 서산시 동문동 963-1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

### 나. 징계 사유

징계대상 의원인 박영웅 의원은 서산시 동문동(동문 71통 273-2일원)시의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초래한바 이에 대하여 징계 하고자 함.

### **3. 適用法規**

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비공개 회의)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생략(비공개 회의)

### **6. 審査結果**

- 30일 출석정지

의안번호	제 67 호
의결년월일	1999. . . . (제 호)

## 서산시의회의원(박영웅)징계요구의건

발 의 자	김 환 성 의원외 6인
발의년월일	1999. 6. 8.

# 징 계 요 구 서

의안 번호	67
----------	----

## 1. 징계대상의원

- 가. 성 명 : 박 영 응 (朴英雄)  
나. 주 소 : 서산시 동문동 963-1  
다. 주민등록번호 : ██████████

## 2. 징계사유

징계대상 의원인 박영웅 의원은 서산시 동문동(동문 71동 273-2일원)의 시의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함.

## 3. 적용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5.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工團의 任·職員
6.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林業協同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常勤 任·職員과 이들組合의 中央會長이나 聯合會長
7. 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

②地方議會議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施設 또는 財産의 讓受人 또는 管理人이 될 수 없다.

**第34條 (議員의 義務)** ①地方議會議員은 公共의 이익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地方議會議員은 清廉의 義務를 지며,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地方議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의2 (議員逮捕의 통지)** 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關係搜查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議長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本條新設 91·12·31)

### 第3節 權 限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94·3·16>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豫算의 審議·확정
3. 決算의 승인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地方稅 또는 加入金の 賦課와 徵收
5. 基金의 設置·運用
6. 重要財産의 취득·處分
7. 公共施設의 設置·管理 및 處分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第10節 秩序

第74條 (會議의 질서유지)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發言 또는 행위를 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紊亂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하거나 그 發言의 取消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命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그 議員에 대하여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을 금지시키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會議을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75條 (侮辱등 發言의 금지) ①地方議會의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他人을 侮辱하거나 他人의 私生活에 대한 發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侮辱을 당한 議員은 侮辱을 加한 議員에 대하여 地方議會에 그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第76條 (發言妨害등의 금지) 地方議會의 議員은 會議중에 暴力을 행사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 他人의 發言을 방해할 수 없으며, 議長 또는 委員長の 許可없이 演壇이나 壇上에 登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7條 (傍聽人에 대한 團束) ①傍聽人은 議案에 대하여 可否를 表明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③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④傍聽人에 대한 團束에 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第11節 懲戒

第78條 (懲戒의 사유) 地方議會는 議員이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第79條 (懲戒의 요구)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對象 議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한다.

②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議員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懲戒를 요구할 때에는 懲戒事由를 기재한 요구서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소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

(추 1)

부한다.

第80條 (懲戒의 종류 및 議決) ①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日이내의 출석정지
4. 除 名

②除名에는 在籍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81條 (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懲戒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  
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 第12節 事務機構와 職員

第82條 (事務處등의 設置) ①市·道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處를 둘 수 있으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과 職員을 둔  
다. <改正 91·12·31>

②市·郡 및 自治區 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  
課長과 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1·12·31>

第83條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

②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한다. <改正 94·3·16>

第84條 (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등) ①事務處長·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처리한다. <改正 91·12·31>

②事務職員의 任用·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을 適用한다.

## 第6章 執行機關

### 第1節 地方自治團體의 長

#### 第1款 地 位

# 서 산 기 독 교 정 년 회 (서산 YMCA)

☎ (356-020) 서산시 읍내동 797-21/(전화)664-0848, 666-1464 FAX 664-2214

문서번호 : 99-05-45

시행일자 : 1999. 5. 29.

경 유 :

수 신 : 서산시의회 의장

참 조 : 사무국장

선			지	
결			시	
점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공	
처	리	과		
담	당	자	람	

제 목 : 박영웅 서산시의원. 징계축구의 건

1.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산YMCA는 지난 3월 24일자 충청일보 지역판에 실린 박영웅 서산시의원에 게 불법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5월말로 종결되며, 서산 시 공무원 징계가 5월 24일로 충남도청에서 징계결과가 나왔기에 서산시의회에서는 박영웅 시의원에 대한 징계논의를 조속히 열어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는 문서번호 의회 13130-118에 검찰수사결과에 의하여 박영웅의원 처분을 하기로 하고, 그 처분여부를 본회에 답변드리다고 하였으니, 가능한한 1999년 6월 10일까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시간적인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기할때는 본 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3. 벌침에 의거하여 본회가 박영웅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삼는 것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붙 임 : 박영웅의원 토지보상금 불법지급 문제점 1부

서산 YMCA 이사장 전 병 구

## 박영웅의원 토지보상금 불법지급 문제점 1부

### (경과)

지난 3월 24일 박영웅 시의원이 토지보상금을 근거당이 설정된채로 보상받은 것에 대해 세간에 물의를 빚어, 서산YMCA에 이에대한 조사요구가 들어왔다.(3월 24일자 충청일보에 보도 됨)

이에 본회 이사회에서는 서산시청과 시의회 이에관한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고, 이에대한 답변이 왔고, 검찰측에 수사촉구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대해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다.

박영웅 시의원이 관계된 토지는 동운동 71통에 소재한 273-2번지 땅으로, 1997년 4월 30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지번에 있는 토지로 272-2번지('97년 5월 19일 보상지급), 267-48번지 송우석씨 땅은 1998년 9월 5일 지급받았고, 267-16번지 땅은 1998년 9월 5일 지급받았고, 274-48번지 김대근씨 땅은 1997년 5월 19일 지급받았고, 274-49번지는 주소 미확실로 반송되어 지급되지 않았다.

여기서, 송우석씨의 땅이 늦게 지급받은 이유는, 옆에있는 지번의 토지인 267-37, 267-47번지 땅이 1997년 5월 26일에 이미 지급받았기에, 1997예산부족으로 다음해인 1998년 지급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보상금 지급은 보상금 해당자에게 보상액에 대한 협의 통보서를 보낸 후 본인에게 청구신청서를 보내, 청구신청서를 내는 대로 본인에게 지급되게 되었다.

충남 도청에서 징계에 대한 인사회신이 5월 24일에 도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서산지청 담당검사는 5월말까지 수사를 종결시킨다고 하였다.

## < 문 제 점 >

먼저, 공무원이 행정적인 잘못을 하였다.

(보상금을 근저당을 해지않은채 행정적 처리한 잘못이 있다.)

두번째로, 박영웅의원은 공인으로서 토지보상금을 근저당을 풀지 않은채, 보상금 받아 이사건의 모든 원인을 제공하였다.

박영웅의원은 공인으로서 토지보상금을 받고도 장기간 근저당을 풀지않았다.

박영웅의원은 근저당을 푼 것이 담당공무원의 차용한 돈으로(2천만원) 근저당을 해지한것은 박봉인 공무원 처지로 시민이 볼 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박영웅의원은 담당공무원의 차용한 돈을 2년간이나 갚지 않은 것은, 한 시민이 볼 때,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들어있을 개연성이 있다.

박영웅의원은 토지보상금 사건을 통하여, 1999년 7월이후 구조조정에 있을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당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박영웅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에 있으면서, 시민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다.

## 공무원징계 결과에 따른 시의회와 시민단체에게 드리는 글

금번 서산시의회 박영웅 의원의 비리는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될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시의회가 시민에게 공정하고 모범적인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한순간에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를 신뢰하던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였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마끼 끈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웅 의원 사건은 끝까지 상명하복의 책임을 다한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두 번씩이나 까져왔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집행부 감사 견제하는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의 원인인 박영웅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음해 한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며 반성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정당함을 시민들에게 오도 설득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자질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으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처가 이루어지기를 시의회에 촉구합니다.

첫째. 시의회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공무원과 시민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둘째. 시민단체는 박영웅 의원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일련의 조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의 내용들은 6월30일까지 신문지상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9. 5. 28.

시 민 단 체

# 중도일보

1999년

5월 31일

(월요일)

단기4332년 음력4월17일

## 지역 (12)

### 근저당토지 보상금 지급 물의

#### 공무원 무더기 징계, 관련 시의원 문책 요구

#####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에서 최근 서산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와 관련, 원인을 제 공한 시의회 의원에게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시의회 P의원이 지난 97년 4월 서산시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 대상토지(답4백27㎡)가 사업상 모회사에 2천만에 저당되어 있고 변제능력이 없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 수령후 즉시 근저당 해제 이행조건을 제시하며 조속한 지급을 독촉하여 보상금(8천3백26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P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여러차례 근저당 해제 독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서산시 자체감사에서 보상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감사 지적 사항이 행을 위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는

P의원 대신 2천만원을 변제해 근저당을 풀고 보상토지의 소유권을 지난해 11월 30일 서산시에 이전했다.

이같이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변제를 하고 이전등기를 했음에도 P의원은 공무원이 대납한 돈조차 4달이 넘도록 갚지 않아 여론화되면서 결국 담당 및 회계관련 공무원 6명이 지난 24일 충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1개월부터 견책 경고등 무더기로 징계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산 YMCA는 시의원의 부탁을 들어준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지만, 공인인 시의회 의원이 근저당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것 부터가 잘못인데다 장기간 근저당까지 풀지 않아 결국 담당공무원이 개인돈으로 해지하는등 의원에게 문책을 촉구하는 요구서들 의회에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瑞山=李仁浩기자〉

## 시의원이 불법 보상금 수령

### 서산시의회 근저당해지 않고 8천만원 받아

시의원이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은 채 시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충남 서산시의회와 서산 YMCA 등에 따르면 시의회 박영웅(朴英雄·57) 의원은 지난 97년 4월 시의 도로개설사업에 소유 토지(동문동) 427㎡(밭)가 편입됐으나 2천만원의 근저당이 잡혀 보상이 어렵게 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 수령 후 즉시 갚겠다고 약속하고 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박 의원은 그러나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1년여 넘게 편입토지의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 돈으로 근저당을 해제했고 박 의원은 올초에야 공무원들에게 빚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6명

은 지난 3월 도의 종합감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등으로 적발돼 지난달 24일 감봉, 견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지자 서산YMCA는 이날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인 박의원이 보상금 토지의 근저당을 풀지 않은 채 보상금을 타내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당사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시의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거나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곧 임시회를 소집해 박 의원 징계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